

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송도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900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10월 14일
발 의 자 : 송도호 의원(1명)
찬 성 자 : 임만균·김제리·이상훈
 김소양·권영희·최정순
 김춘례·박기재·최 선 의원(9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현재 친환경차(전기·수소버스) 보급정책을 추진 중으로 2025년까지 전기버스 3,476대 도입을 목표로 대폐차 수요에 맞춰 2021년부터 친환경차(전기·수소버스)로 전면 교체, 연평균 약 559대의 전기버스를 도입할 예정임.

하지만 이러한 친환경차 도입계획에도 불구하고 관련 국내산업구조는 대규모 해외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을 하기에는 규모 및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부족한 실정으로 관련 국내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공정한 경쟁 환경 장려, 자율경쟁을 통한 성능 개선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이 재정지원시책 수립 시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도록 함.

2. 주요내용

- 친환경차(전기·수소버스) 도입을 위한 별도의 지원시책 수립 시 반영할 지원기준을 신설함(안 제9조제6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,
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쟁 환경 장려, 자율경쟁을 통한 성능 개선 및 가격경쟁력 확보에 힘써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⑤ (생 략)</p> <p>⑥ 시장은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기자동차, 수소전기자동차로 신규 시내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.</p> <p><u><후단 신설></u></p>	<p>제9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. 이 경우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쟁 환경 장려, 자율경쟁을 통한 성능 개선 및 가격경쟁력 확보에 힘써야 한다.</u></p>